2023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2023. 4.



공정거래위원회

목 차

Ⅰ. 추진과제 총괄표 ····· 3

Ⅱ. 공통자율 추진과제 ····· 5

1.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 5
2.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 7
3.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 13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 13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 16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 29
7.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 31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 36
9.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 49

Ⅲ. 정부혁신 확산 방안 ····· 54

Ⅰ. 추진과제 총괄표

1.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세부추진과제명	소관부서	추진일정
1.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1 소비자24 챗봇 서비스	소비자안전교육과	'23. 1월~
2.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2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활성화	기업결합과	'23. 6월~
3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공시점검과	'23. 3월~
3.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1 소비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	소비자안전교육과	'23. 5월~

2.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1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비정형) 데이터 개방	정보화담당관실	'23. 1월~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1 대리점 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광역 지자체 위임	유통대리점정책과	'23. 1월~
2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투명성 강화	조사총괄담당관실	'23. 2월~
3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조사총괄담당관실	'23. 2월~
4 공정거래위원회 Fairdata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화담당관실	'23. 3월~
5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23. 4월~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1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23. 3월~

3.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7.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1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디지털서비스 개방	정보화담당관실	'23. 2월~
2 SNS 후기형 기만광고 상시 모니터링	소비자거래정책과	'23. 3월~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1 플랫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민간 중심 자율규제	온라인플랫폼정책과	'23. 1월~
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확산	기업거래정책과	'23. 1월~
3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약관특수거래과	'23. 2월~
4 소비자24 제품 인증 정보 개선	소비자안전교육과	'23. 1월~
5 CVC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기업집단관리과 기업집단결합정책과	'23. 1월~

9.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1 국민이 직접 뽑는 정책 제안 평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23. 6월~
2 쌍방향 소통을 통한 지역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	광주사무소	'23. 1월~

Ⅱ. 공통자율 추진과제

1.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1. 국민 일상이 편해집니다.

1-1-① 소비자24 챗봇 서비스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안전교육과	협조기관	-
담당자	김태훈 조사관	연락처	044-200-4911
소요예산	('22년) 363백만, ('23년) 363백만		

□ 추진배경

○ 정보 연계 확대 및 복잡·다양화로 점차 소비자24 내 정보검색이 어려워지면서 정보를 보다 간편하게 맞춤형 제공할 방안이 필요

* `21년 소비자24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사용하기 어려운 메뉴와 용어 해설, 피해구제 신청 매뉴얼 제공, 쌍방향 소통 등을 주문하는 응답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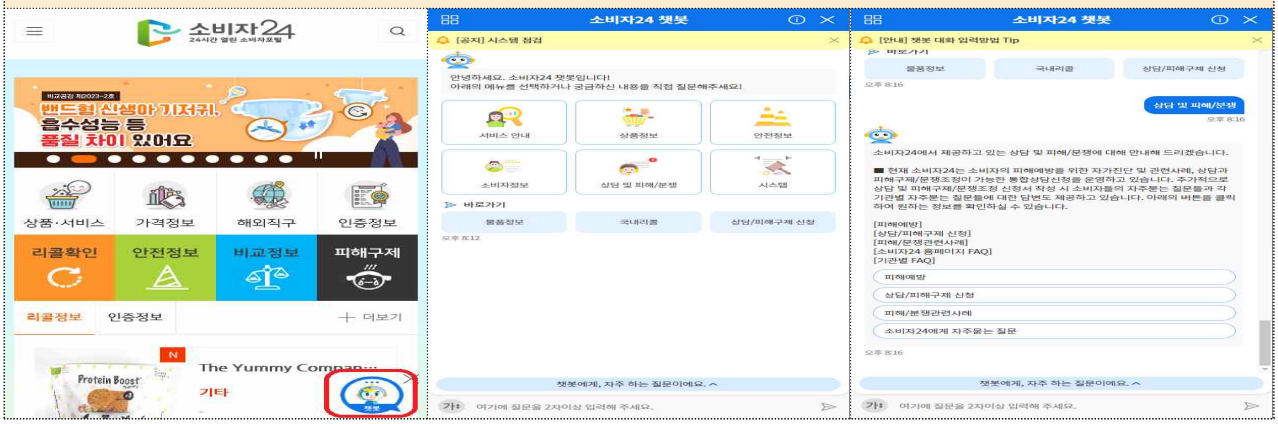
□ 현황(문제점) 진단

○ 이용자가 소비자24 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는 데 소요되는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22년에 챗봇 서비스를 시범 도입

* `22년 구축 시 행안부 국민비서 연계(음성기반 서비스 포함)도 병행 추진하여 국민비서를 통해 인입된 이용자의 질의에 답변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인공지능 특성상 **질의응답 DB 확대** 및 **학습 지속수행 필요**

챗봇 서비스 이용 화면 예시



□ 추진방향

○ 챗봇 답변 분야의 확대와 데이터 고도화, 서비스 안정화로 품질 전반을 제고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그간의 이용자 행태를 분석한 결과 및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DB를 고도화하여 챗봇 답변 분야 확대

○ 챗봇 서비스를 이용한 대화 기반의 간소화된 상담 신청 기능 개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조하에 챗봇 서비스 기반 증설 및 안정화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소비자24 챗봇 도입으로 원하는 정보를 좀더 쉽게 탐색할 수 있게 됨 - 당초 구축 시 챗봇용 질의응답 기초 데이터가 제한적	○소비자24 챗봇 이용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 품질을 확충 - 상담신청, 분쟁해결기준 확인 등을 챗봇 서비스化하기 위한 기존 DB의 확대

□ '23년 소요예산

○ 챗봇 학습용 데이터 수집, 정제 및 학습 실시 등을 위한 연구비 295백만원 및 자산취득비 68백만원 소요

□ 추진일정

○ 챗봇 데이터 확대 및 서비스 계획 마련(1분기)

○ 챗봇 데이터 확대 사업 발주(2분기)

○ 환경 및 기초데이터 분석 실시(2~4분기)

○ 시범운영 실시(4분기)

□ 홍보계획

○ 서비스 확대 개시 시점에 보도자료 배포 및 소비자24에서 대국민 이벤트 개최

2. 기업 경제활동이 쉬워집니다.

1-2-2 '기업결합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활성화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결합과	협조기관	해당 없음
담당자	차상영 조사관	연락처	044-200-4628
소요예산	-		

□ 추진배경

○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1년 1,000건을 돌파**하였으며 **심사부담**과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의 **비효율 발생**

* ('18) 731건 → ('19) 772건 → ('20) 865건 → ('21) 1,113건 → ('22) **1,027건**

- 공정위는 **'21년부터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결합신고의 **온라인화를 추진**하였고, **온라인 신고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

* 온라인 신고 비율: ('20) 0.6% → ('21) 1.6% → ('22) **40.7%**

- 특히, '23. 2월부터는 **기존 간이신고에 한정**된 온라인 신고범위를 **일반신고 대상**까지 **확대**하여, **온라인 신고 전면화가 가능**

□ 현황(문제점) 진단

○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의 전면 개편('23. 2월~) 등으로 인한 **UI 변경, 신규 회원가입 및 신고 절차 미숙** 등으로 **여전히 오프라인 신고 접수** 사례가 **지속 발생**

* '23.2.1.~3.28. 기간 중 접수된 총 108건의 신고 중 **22건(20.4%)이 오프라인 신고**

- 특히, 신규 시스템의 사용자 맞춤형 **편의기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온라인 신고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여전히 유선을 통한 접수 여부, 심사 진행사항 문의** 등이 **빈번**

* 온라인 신고 이후 접수, 심사, 통지 등 전 과정에서 접수증 자동 발급, 심사 진행사항 조회, 온라인 자료 제출 등 사용자 맞춤형 원스탑 서비스가 제공됨('23.2.1.~)

□ 추진방향 : 오프라인 신고 →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화 추진

○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의 **대외 홍보** 및 **기능 개선**

- 기업결합설명회 등 온라인 신고 시스템의 **대외 홍보 강화**
- 온라인 신고 과정에서 기업 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및 기능 개선**
-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관련 규정 개정**

* 현재 간이신고는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기업결합 신고요령'에 규정(`21.12.30. 시행)

□ 세부 추진사항

○ (상반기) ❶기업결합 설명회(6월, 11월) 등 시스템 대외 홍보
❷사용자 요구 사항 수렴 및 오류, 기능 개선

○ (하반기) 온라인 신고를 원칙으로 본격 운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온라인 신고율) 40%대 ('22년)	→	○ (온라인 신고율) 80%대↑ ('24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비용 및 인력) 인쇄·우편 등 행정비용, 심사기간 장기화 우려	→	○ (비용 및 인력) 인쇄·우편 등 행정비용 Zero화, 심사기간 단축

□ '23년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체계 : 기업결합과, 국제기업결합과, 기업집단결합정책과 공동 추진

□ 추진일정

○ (6월, 11월) 기업결합 설명회를 통한 기업 담당자 교육 및 홍보

1-2-3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협조기관	해당 없음
담당자	송용택 사무관	연락처	044-200-4937
소요예산	비예산사업		

□ 추진배경

○ 공정위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①대규모내부거래등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②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③기업집단현황 공시

- 그간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공시기준은 강화·유지되어 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경제 및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 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지난해 6월과 11월에 간담회를 개최해 기업·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 진단

□ 추진방향

○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 활용의 효용성 제고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세부 추진사항을 설정

【세부 추진사항】

①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

② 3개 공시제도 간 상호보완을 통해서 시장감시 기능을 유지

③ 잘못된 정보를 공시한 기업이 신속하게 정정하도록 유도해 정보의 정확성 제고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①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②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관련하여 매년 분기마다 공시하던 12개 항목 중 활용이 낮고 다른 공시제도로 보완되는 8개 항목*을 연공시로 통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③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감경률을 세분화해 최대 50%에서 75%로 확대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사항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기업들의 공시 부담 과중 ○ 공시정보 이용의 불편함	○ 기업들의 공시 부담 완화 ○ 공시정보 이용의 효용성·정확성 제고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특이사항 없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올해까지 시행령 및 관련 하위지침 개정 완료

□ '23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공시규정 및 2개 과태료규정 개정('23. 3월 내), 시행령 및 하위지침 개정 ('23. 12월 내)

□ 홍보계획

○ 이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관련 보도 자료 배포(2회 예상)

3. 사회 안전을 든든히 지킵니다.

1-3-1 소비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안전교육과	협조기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국표원, 한국소비자원
담당자	이나영 사무관	연락처	044-200-4422
소요예산	('22년) -, ('23년) 56백만(신규)		

□ 추진배경

○ **해외직구 증가**에 따라 **소비자들의 생명·건강에 위해**를 야기하는 해외리콜 제품 등 소비자 위해제품들이 **국내로 유통**되는 문제 발생

- 온라인 거래 확대 및 편리성 향상,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 강화 등으로 인해 해외직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중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검사, '19년)

□ 현황(문제점) 진단

○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고 있으나, 수많은 위해(危害)제품들을 모두 차단하기에는 역부족

* 공정위, 환경부, 식약처, 국표원, 관세청, 소비자원으로 구성되어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 및 소비자 안전 관련 제도개선, 중복조치 방지 등의 업무 수행

- **위해제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민간단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 및 시정**을 추진할 **필요**(국정과제 30번)

□ 추진방향

○ 온라인에 유통되는 소비자 위해제품을 모니터링 및 시정(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외 리콜제품 등 소비자 위해제품이 판매되고 있는지 **상시 모니터링**하고,

- 위해제품이 유통 중인 경우*, 플랫폼 및 사업자 등에게 판매중단, 리콜 등 **자진시정을 권고**한 후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 **(재)유통 차단**

* 소비자2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의 해외 리콜제품 목록 등과 비교·대조

○ 모니터링,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소비자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소비자 위해제품이 온라인에 유통되어 소비자 안전 위협	○ 온라인 모니터링(1,500건) 및 소비자 위해제품 유통 차단(85%)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소비자 위해제품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모두 차단하기에는 한계	○ 민간단체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소비자 위해제품 유통을 모니터링 및 차단하게 함으로써 위해제품 모니터링 강화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해당사항 없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소비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방지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시 관련 제도개선

□ '23년 소요예산

○ 상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총 0.56억 원 소요

□ 추진체계

○ (공정위) 사업 수행자 선정, 교육, 관리

○ (사업 수행자)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 제도개선 방안 연구

○ (협조기관) 위해제품 정보 제공

□ 추진일정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통한 모니터링 수행자 선정(~5월)

○ 상시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요청 등(6~12월)

○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보고(~12월)

□ 홍보계획

○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 발표('24.1월)

2.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4. 과학적 근거로 정책의 질을 높입니다.

2-4-1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비정형) 데이터 개방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화담당관실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담당자	황태규 사무관 신호 사무관	연락처	044-200-4275 044-200-4284

□ 추진배경

○ 가맹 예비창업자 및 계속 사업점주에게 가맹창업시 필요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여 가맹사업 창업시 발생가능한 피해예방

○ 지자체·위원회 가맹관련 부서가 정보공개서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검증 기능*을 개발·연계하여 심사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정거래법 위반건수, 가맹본부 재무현황, 특허 등

□ 현황(문제점) 진단

○ 가맹정보공개서(비정형) 공개본 형식이 PDF 등 비표준형식으로 제공되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존재함

○ 예비 가맹사업 사업자가 가맹사업 선정시 가맹본부별로 정보공개서를 일일이 다운로드후 각 내용을 분석하고 비교하기 어려움 존재

□ 추진방향

○ 비표준형식의 파일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인 XML 등 표준형식으로 변환하여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공

○ 비정형 정보공개서간 비교를 원하는 정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추출하고 항목 및 요소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발굴하여 제공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PDF 등 비표준 형식을 기계판독이 가능한 표준형식으로 변환후 개방

- 표준정보공개서 고시와 가맹본부가 제출한 비표준 정보공개서를

매칭하여 목차와 항목을 자동식별하고 색인화함

- 정보공개서 항목을 기준으로 텍스트(값), 이미지(객체)를 구조화하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XML 등 표준형식으로 변환

○ 비정형 정보공개서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중요 정보를 자동·수동 기법으로 추출하고 활용이 용이한 정형 데이터로 개방

- 인공지능기반의 OCR도구를 이용하여 표 등에서 중요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오류 발생시 수동으로 변환

- 자동 추출한 정보에 대한 오류를 검증하고 개선하여 자동변환 성공률을 높임

○ (데이터 융·복합) 기 개방한 정형정보와 신규 구축한 정보간 융·복합을 수행하여 활용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데이터로 개방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공공데이터 포털의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107건(오픈API)	○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규 75건을 개방하여 총 개방건수 확대(107→182)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민간) 가맹본부에서 제출한 비정형 정보공개서간 정보비교의 어려움이 존재	○ (민간) 비정형 정보공개서에서 중요정보를 추출하고 동일 항목끼리 구성하여 비교 및 연관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
○ (공공) 가맹정보공개서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자료검증을 위한 데이터 부족	○ (공공) 위원회내 시스템 및 외부정보와 연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자료검증으로 심사시간 단축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해당없음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없음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가맹정보공개서(2차) 개방을 위해 행안부에 개방에 필요한 예산 수요신청('22.11월)

○ 가맹정보공개서(2차) 데이터 개방 사업계획서 작성('23.1월~'23.2월)

○ 가맹정보공개서(2차) 데이터 개방 제안요청서 작성('23.3월)

○ 가맹정보공개서(2차) 데이터 개방 사업발주('23.4월)

○ 가맹정보공개서(2차) 데이터 개방 사업자선정 및 사업시작('23.6월)

○ 가맹정보공개서(2차) 데이터 개방 사업 수행('23.6월~'23.11월)

○ 공공데이터 개방이행('23.12월)

□ 홍보계획

○ 붙임참조

5. 유연하고 민첩하게 일합니다.

2-5-1 대리점 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광역 지자체 위임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협조기관	17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	이성태 서기관	연락처	044-200-4962
소요예산	없음		

□ 추진배경

○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 가능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

○ 한편, 서울, 경기 등 지자체는 현장밀착형 행정 등을 위해 대리점 분야의 법집행 업무를 본인들이 수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음

□ 현황(문제점) 진단

○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것이 법 집행 측면에서 효율

-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

* (예) 가맹사업법(공정위), 폐기물관리법, 하천법(환경부), 전기사업법, 석탄산업법(산업부), 양곡관리법, 간척지법(농림부), 건설산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국토부) 등

< 참조: 권한의 위임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규정 >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추진방향

○ 대리점 분야에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신속히 조치가 가능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법집행체계를 개선하여 집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대리점법 제5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을 시·도지사에 위임(제19조의3 신설)

< 참조: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법 규정 >

법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8. (생 략)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생 략)

4.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

6. (생 략)

②~④ (생 략)

- 시·도지사의 법집행 준비 및 공정위의 권한 이양 작업을 위한 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4년부터 시행(부칙)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공정위가 대리점 분야 모든 법집행 담당	○ 17개 광역지자체와 공정위가 법집행 분담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모든 대리점 분야 행위를 공정위가 집행함으로써 신속한 피해구제 측면에서 다소 미흡	○ 지자체와 업무 분담을 통해 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 가능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위 세부 추진사항 참조)

□ 추진일정

○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상반기)

○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 시행('24.1.1.)

□ 홍보계획

○ 시행령 개정완료시 및 시행시 각각 보도자료 배표

2-5-2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투명성 강화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조사총괄담당관	협조기관	해당없음
담당자	박지아 사무관	연락처	044-200-4685
소요예산	비예산사업		

□ 추진배경

○ 국민과 시장의 높아진 눈높이를 반영하여 공정위 **법집행 체계**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업그레이드**할 필요

- 조사절차 보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위 법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합리적 법집행을 위해 **조사권 행사**의 **내용**과 **한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조사절차**를 더욱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 현행 현장조사 공문에는 관련 법 조항만 기재하여 조사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 현장조사 시 법무팀 등 준법지원부서부터 먼저 조사할 경우 기업의 준법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심의단계와는 달리 조사단계에서는 공식적 의견청취절차가 부재하다는 점 등

□ 추진방향

○ 공정위 조사권 행사 범위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 마련

○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 확대**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현장조사 공문 구체화)**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거래분야·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조사기간 연장사유 기재)** 현장조사 기간 연장 공문에 연장된 조사기간 뿐만 아니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사유**도 적시

○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 조사 편의를 위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실시

* ①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②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혐의와 관련된 업무도 **직접 수행**하는 경우, ③현장진입 시 피조사인의 **조사거부·방해 혐의**가 있는 경우, ④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기초사실·쟁점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피조사인과 사건관리자(국과장) 간 **공식적인 대면회의** 절차 도입

○ **(이의제기 절차 신설)**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범위를 넘어서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피조사인의 **공식적인 반환 요청 절차** 도입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현장조사 공문 기재내용 만으로는 조사범위 예측에 한계가 존재하여 공정위 조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존재 ○ 준사법기관으로서 조사절차가 더욱 보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조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및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 강화 - 공정위 조사목적 등이 더욱 명확해짐에 따라 피조사인은 자신의 협조의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가 가능 ○ 조사공문에 기재된 조사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관행 정립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의 조사절차 보강을 통해 법집행의 설득력을 강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 개정('23.4월)

- 현장조사 공문 구체화(제10조 개정)
- 조사기간 연장 사유 기재(제12조 제2항 개정)
- 준법지원부서 조사기준 마련(제11조 제2항 신설)
-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제22조의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개정('23.4월)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 신설(제15조의2 신설)

○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 제정('23.4월)

- 이의제기의 처리 절차와 제출자료 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

□ '23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마련('23.2월)

○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23.3월)

○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23.4월)

□ 홍보계획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언론브리핑(2.16.)

○ 고시 개정안 및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시 보도자료 배포(3.14.)

○ 고시 개정안 및 지침 제정안 시행 시 보도자료 배포(4.14)

2-5-3 사건기록물 관리 고도화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조사총괄담당관	협조기관	해당없음
담당자	이동규 사무관	연락처	044-200-4706
소요예산	비예산사업		

□ 추진배경

○ 공정위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 기관으로서, **법 집행 관련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

- 철저한 기록물 관리는 **투명한 사건처리**를 담보하고, 쟁점파악 등을 용이하게 하여 **신속한 사건처리**에 도움

□ 추진방향

○ 사건 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2개 규정*** **및 내부 업무절차**(매뉴얼) **정비**

* 「조사절차규칙」(공정위 고시), 「사건기록 관리규정」(공정위 예규)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심의기록물 관리방식 규정(매뉴얼 정비)

○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사건기록 관리규정 개정)

○ 불필요한 자료 **반환·폐기 절차 공식화**(조사절차규칙 개정)

○ 각종 자료의 **편철방식 합리화**(매뉴얼 정비)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일부 미흡한 기록물 관리 실태	○ 철저한 기록물 관리로 법집행의 투명성, 효과성, 신속성 제고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5항 및 제18조 제3항 개정, 제14조의2 신설

- 현장조사 수집·제출 자료를 선별한 후,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반환하도록 규정
- 일련의 선별·반환 과정에서 수집·제출자료 목록, 선별·반환자료 목록을 작성 및 교부하도록 함

○「사건기록 관리규정」제5조의2 신설

- 기록물 생산부서(조사부서/심결부서)의 국·과장이 기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

□ '23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일정

○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기록 관리규정 개정안 마련('23.2월)

○ 조사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23.3월)

○ 편철 매뉴얼 개정안 마련('23.4월)

○ 조사절차규칙, 사건기록 관리규정, 편철 매뉴얼 개정안 시행('23.4월)

□ 홍보계획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언론브리핑(2.16.)

○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시 보도자료 배포(3.14.)

○ 고시 개정안 시행 시 보도자료 배포(4.14)

2-5-④ 공정거래위원회 Fairdata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화담당관실	협조기관	해당사항 없음
담당자	황태규 사무관 신호 사무관 나상태 조사관 박진경 조사관	연락처	044-200-4275 044-200-4284 044-200-4278 044-200-4283

□ 추진배경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 관련 통합 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사건조사, 업무처리시 필요한 디지털 매체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각 매체의 용량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 및 대응 필요

○ 일반국민, 이해관계자(소비자, 기업 등)에게 공정거래 관련 유용한 정보를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로 제공할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현재의 정보시스템은 공정거래 관련 정보가 기관별, 부서별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데이터 기반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

○ 빠르게 증가하는 디지털 매체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및 관리시스템의 부재

○ 수요자 맞춤형 공정거래 관련 데이터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 추진방향

○ (현행) 공정거래(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소비자) 관련 데이터가 기관별,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를 단편적으로 분석·활용하고 있음

○ (개선)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 통계·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응용서비스 등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세부 추진사항

○ 통계, 통합정보 및 검색, 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 제공 서비스 구축

○ 데이터기반 사건처리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 자연어처리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지능형 응용 서비스 구축

○ 지속적인 데이터 발굴·관리·제공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공정위 및 산하기관의 개별시스템에서 각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관리	○ 공정거래 관련 데이터를 연계·통합하고 분석용 데이터 마트를 설계 및 구축
○ 담당자가 정책결정 및 사건처리에 참고하기 위해 공정거래 관련 뉴스, SNS게시글 등을 개별 검색처리해야 함	○ 외부에서 공정거래 분야 뉴스, SNS 등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고 내부망으로 연계 및 분석하여 정책·사건처리 등에 참고할수 있는 정보를 제공
○ 민원인이 해당민원 담당기관·부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자연어기반 질의응답 등 인공지능서비스를 활용, 각 민원을 분석하여 담당기관·부서를 추천, 민원내용 작성시 유사민원사례 추천 등 민원처리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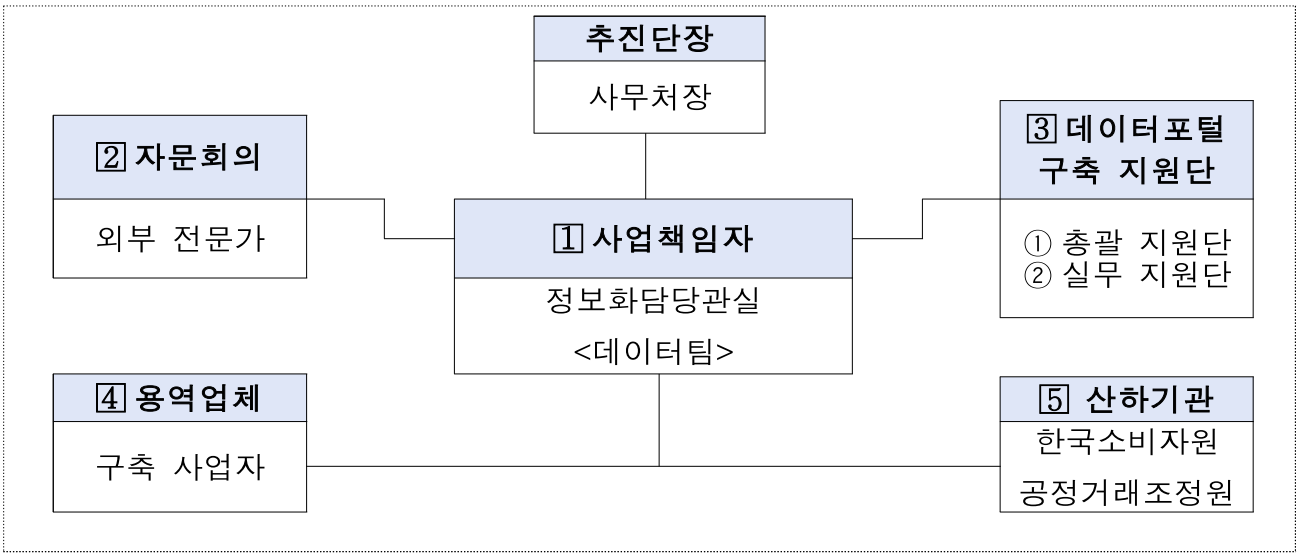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기관별, 부서별로 별도 보유 및 분석으로 데이터 활용에 한계	○ 데이터를 통합후 분석하여 사용자 맞춤형 데이터를 발굴하고 데이터 분석에 활용 가능
○ 공정거래 관련 외부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	○ 외부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 및 시각화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
○ 민원인이 해당민원을 처리하는 기관 및 부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민원인에게 적정한 처리기관 및 부서를 추천하고 유사민원 처리사례를 제공하여 민원해결 지원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해당없음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2차 사업 완료('23년 3월)

○ 2차 시범서비스 개시('23년 3월)

○ 3차 사업 계약의뢰('23년 3월)

○ 2차 운영사업 수행('23년 1월~12월)

○ 3차 구축사업 수행('23년 4월~ '24년 3월)

□ 홍보계획

○ FairData 알림판에 홍보 배너를 제작하여 홍보

○ FairData 시스템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

○ 팸플릿 등을 제작하여 오프라인 홍보

○ FairData 홍보를 위한 소식지 제작 및 배포(격월)

○ FairData 관련 컨텐츠 제작·배포를 통한 대국민 교육·홍보 추진

2-5-5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혁신

주관부처/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협조기관	-
담당자	이유진 사무관	연락처	044-200-4267
소요예산	해당없음		

□ 추진배경

○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5급 이하 신규 공무원으로 구성,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공직사회 혁신방안 도출·실행

○ 공직사회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기관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넘치는 공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혁신으로 기관 내 활력 제고

□ 현황(문제점) 진단

○ 신규직원의 인사고충 · 조직문화 혁신 등에 대한 전달 통로 부족

○ 근무기간이 짧은 직원들의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필요 존재

□ 추진방향

○ 정부혁신을 이끌어갈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10여명의 구성원 선발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MZ세대(1980~1994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 + 19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
- 자발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희망자 및 기존 주니어보드 구성원 연계를 통한 멤버 모집

○ 혁신 조직문화 정착 및 불합리한 공직 관행 개선방안 토의 등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주니어보드 및 공정위 혁신어벤져스 선발 및 통합 운영

○ 분기별 정기모임 및 수시모임* 진행

* 핵심멤버 3~4인 선정하여 조직문화 혁신방안 수시모임

○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된 공정위 내 불합리한 공직 관행 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 공직문화 개선 프로젝트 진행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조직문화개선TF, 주니어보드, 정부혁신 어벤져스 산발적 활동 ○ MZ세대 의견 수렴 창구 부족	○ 통합활동을 통한 소통 창구 일원화 ○ 공정위 내 불합리한 공직관행 개선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정부혁신 어벤져스 멤버 구성의 어려움 및 낮은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주니어보드와 연계하여 선발하고 참여우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 '23년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추진체계

○ 주니어보드 30인 선정, 그 중 10인은 MZ세대 위주의 정부혁신 어벤져스 임명

○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직원(정부혁신 담당자 포함)을 2인 이상 포함시켜 핵심멤버를 구성하고 혁신행정 담당자는 총무직 수행

□ 추진일정

○ (5월) 멤버 선정(주니어보드-정부혁신어벤져스 선정) 및 1분기 모임

- 1분기 모임시 연간 공직 관행 개선 과제 선정

○ (6월·9월) 정부혁신 어벤져스 2·3분기 모임

- 공직 관행 개선 과제 개선안 마련 및 프로젝트 진행

○ (11월) 정부혁신 어벤져스 성과공유회

6.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합니다.

3-6-1 적극행정 제도 내실화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협조기관	-
담당자	김기수 사무관	연락처	044-200-4263
소요예산	없음		

□ 추진배경

○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공정경제 구현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 지속 필요

- 제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마련

□ 세부 추진사항

<적극행정 관련 혁신마일리지 및 협업포인트제 운영>

○ 적극행정 추진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혁신마일리지와 협업포인트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실천동기 부여**

* 혁신마일리지 및 협업포인트 상위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 및 상금 부여**

- (혁신마일리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자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서도 **혁신마일리지 부여**

- (협업포인트) 사전컨설팅 신청, 적극행정委 심의안건 제출, 중점과제 담당자, 적극행정 관련 언론보도 등 **적극행정 관련 협업포인트 부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분기별 연 3회)

- 선발된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하나 이상 부여(승진 가점, 포상휴가 등)하되, 50%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격적 인센티브(성과급 최고등급, 의무적 포상휴가(10일) 등)를 부여
- 선발자 모두에게 **기관장 표창 및 상금**을 지급하고, 인사기록카드 상훈정보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수상 기록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적극행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미흡	○ 기관 내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 추진일정 및 홍보계획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보도자료 배포(3회)

○ 혁신마일리지 및 협업포인트 상위자 인센티브 부여('23. 12월)

3.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7. 사회문제를 예견하고 대비합니다.

3-7-1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디지털서비스 개방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화담당관실, 특수거래정책과	협조기관	행정안전부
담당자	김현종 사무관 이정숙 조사관	연락처	044-200-4273 044-200-4438
소요예산	없음		

□ 추진 배경

○ 공정위는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하 '두낫콜')을 운영

- 「방문판매법」 제42조 ①공정위는 전화권유판매자의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등록할 수 있는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
  ②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 판매 금지

○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민간앱을 통한 '두낫콜' 등록 확대가 필요

* 상담건수: ('20년) 24,089건 → ('21년) 36,599건 → ('22년) 24,597건 (출처: 1372소비자상담센터)

□ 현황 진단

○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앱(네이버, 카톡 등)에서도 누구나 쉽게 '두낫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

- 국민이 **공공**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다수의 웹·앱**에 접속하여 **분절적**으로 이용해야하는 **불편 해결**

□ 추진방향

○ 사업자로부터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전화권유판매에 대해 수신거부 의사를 **사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민간앱' 연계**를 통해 등록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국민】	⇔	【민간 플랫폼】	⇔	【디지털서비스】
원스톱 신청・이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 행안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과제 실무협의

○ '민간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비자가 '두낫콜' 등록 및 철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두낫콜' 등록 메뉴가 무료 부가서비스 메뉴 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도록 협의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월평균 등록 수 약 15천명(2023년 기준)	○ 월평균 등록 수 10% 증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 '두낫콜'을 방문하여 별도 신청하는 불편	○ 국민 :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플랫폼에서(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 ○ 민간 : 새로운 융합서비스 창출을 통한 자사플랫폼 활성화 ○ 공공 : 이용·신청 채널 확대로 수요자의 이용편의성 제고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두낫콜’ 가입자 증가 시 휴대폰 본인확인 요금 부족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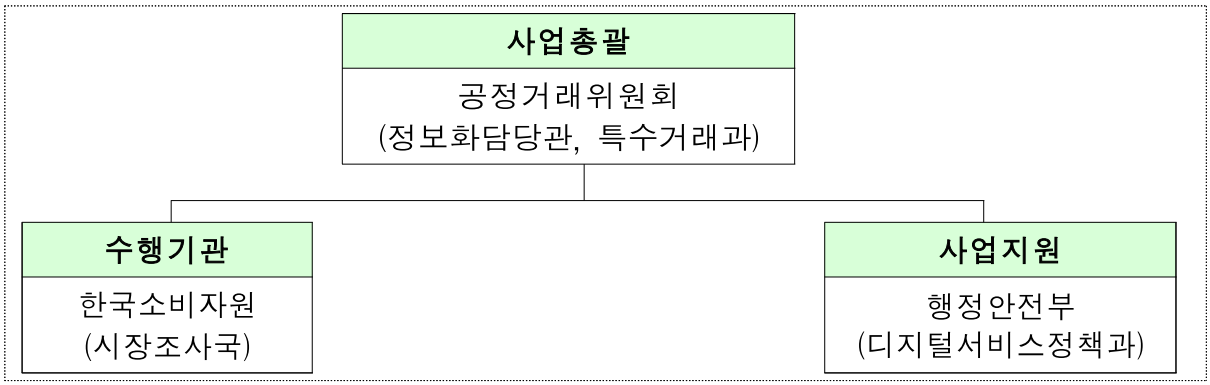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3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행안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과제 제출(’23. 2월, 4월)

○ 행안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사업 발주 및 계약(’23. 6월~)

○ 행안부 관계자와 실무협의 및 시스템 구축(’23. 7월~)

○ ‘두낫콜’과 ‘민간앱’ 연계 사업 완료(’23. 12월)

□ 홍보계획

○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에 맞춰 ‘두낫콜’ 누리집에 홍보(’24.1월)

3-7-2 SNS 후기형 기만광고 상시 모니터링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거래정책과	협조기관	-
담당자	박현욱 사무관	연락처	044-200-4449
소요예산	('22년) 191백만, ('23년) 189백만		

□ 추진배경

○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20.6월) 이후 '뒷광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홍보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어, SNS 후기를 통해 상품 정보 습득 및 구매 결정을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방해

*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은폐하는 후기 형태의 기만 광고

- 이에,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뒷광고 시정 및 사업자 교육 등으로 법 준수 문화 확산 필요

○ SNS 매체를 활용한 후기형 광고 게시물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광고임을 은폐하고 순수한 후기로 위장한 기만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현황(문제점) 진단

○ 뒷광고 등 SNS상 기만광고는 신유형의 부당광고로서 광고 접근성이 높아 누구나 손쉽게 광고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광고 단가가 저렴하여, 영세사업자(광고주), 일반인(광고작성자) 비중이 높음

- 때문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기만광고를 신속히 제거하는 한편, 일부 악의적 사례 등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필요

□ 추진방향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를 상시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요청 등을 통해 업계 내 자율적 법 준수 문화 확산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주요 SNS에서의 상품 후기형 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 자진시정 요청 및 이행점검, 사업자 교육 등

- 모니터링 중 상습적이거나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할 계획
- 인플루언서, 광고대행사 등 업계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예방을 위한 사업자 교육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주요 SNS에서 순수한 후기로 위장한 광고 게시물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방해받음	○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해당 게시물이 광고라는 사실을 알면서 구매를 결정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 가능
○ 「표시광고법」은 '사업자'를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뒷광고는 학생·주부 등 일반인들이 작성하고 있어 법만으로는 법 위반 해소가 곤란	○ 모니터링으로 자진시정 요청을 통해 일반인들의 자진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

□ '23년 소요예산

○ 상시 모니터링 및 사업자 교육 등 총 189백만 원 소요

□ 추진일정

○ 경쟁입찰을 통한 모니터링 수행자 선정 완료(3월)

○ 상시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요청 등(3~12월 상시)

○ 사업자 교육(3회, 각 분기말)

○ 보도자료 등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 발표('24.1월)

□ 홍보계획

○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결과 보도자료 배포

8. 상호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3-8-1 플랫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민간 중심 자율규제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온라인플랫폼정책과	협조기관	기획재정부 등
담당자	한호영 사무관	연락처	044-200-4623
소요예산	.		

□ 추진배경

○ 최근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재편 중*
→ 플랫폼의 시장 내 영향력 및 **소상공인·소비자**의 플랫폼 **의존도 급증**

* 온라인쇼핑 거래액(통계청) : ('10) 25.2조 → ('15) 54.1조 → ('20) 161.1조 → ('22) 206.4조

- 이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의 다양한 **불공정 이슈*** 대두

*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 불투명한 입점계약 관행 등
(플랫폼-소비자) 소비자 피해구제 장치 미흡, 소비자 정보 제공 부족 등

○ 이 중,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등 현행법이 적용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되,

-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이해조정** 등 소위 **갑을·소비자 이슈**에 대해서는 입법에 앞서 **민간 중심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국정과제 30-1)

* 자율규제 방식은 각 플랫폼 업종별로 거래구조 및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율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논의 과정에서 시장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거치는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높은 수용성 기대 가능

□ 추진방향

○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는 다양하고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장규율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

-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자율기구 논의를 지원하되,
-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중재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조정자**로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

□ 세부 추진사항

◇ (**추진체계**) 플랫폼社・입점업체・소비자・종사자 등과 관련된 주요 협회・단체와 기업으로 구성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22.8월)

- 분야별 구체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갑을**, ◎**소비자・이용자**, ◎**데이터・AI**, ◎**혁신공유・거버넌스** 4개 분과를 구성('22.9월)

* 공정위는 갑을 분과 및 소비자·이용자 분과를 중심으로 지원

○ (**갑을 분과**) 플랫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중

- 최근 **배달앱** 분야에서 **자율규제 첫 성과*** 발표('23.3월)

*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등으로 구성

-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 진행 중(~2/4분기)
- 추후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업종으로 자율규제 논의 확대 예정

○ (**소비자 분과**) 오픈마켓 분야를 중심으로 **사기 쇼핑몰** 등으로 인한 **소비자 집단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 논의 중(~2/4분기)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자율규제 방안 논의(0건)	○ 자율규제 방안 마련·발표(2건) ○ 숙박앱 등으로 자율규제 논의 확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계약관행·분쟁처리 개선, 상생 방안 마련 등에 관한 입점업체 요구↑ ○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필요성↑	○ 입점계약 투명성 제고 등 계약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방안 마련 등 ○ 오픈마켓 분야 소비자 집단피해 신속 대응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개별 쟁점마다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계** 간 **입장 차**가 크다 보니 논의 진행이나 자율규제 방안 마련에 **다소 진통이 있는 측면**

- 다만, 각 분과 구성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소정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기대
- 공정위 또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계획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3년 소요예산

○ 해당 없음

□ 추진체계

○ 보도자료 참조 ('22. 8. 19. 배포,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

□ 추진일정

○ '세부 추진사항' 참조

□ 홍보계획

○ 자율규제 성과 도출 시 보도자료 배포

- 필요시 자율규제 성과 발표회 등 행사 개최

3-8-2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협조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	신용호 사무관	연락처	044-200-4947
소요예산	없음		

□ 추진배경

○ 코로나-19 유행,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중소기업**은 이를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 상황**

* '20년 대비 '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 상승한 반면 납품대금은 10.2% 인상에 그쳐 영업이익률은 7.0%→ 4.7%로 감소(중기중앙회 조사, '22.6.10일 발표)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조사

* 중소기업이 제값 못받는 현실 불공정 94.5%,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필요 88.7%(중기중앙회 조사, '22.9.7일 발표)

□ 현황(문제점) 진단

○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정협의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잘 활용되지 못함

○ 또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중기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요건 충족 여부 확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대행협상을 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요건 충족 여부 판단에 약 한 달의 시간과 약 1천만원 비용 소요

※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긴급 실태조사 결과
- 조정 요청 경험 있는 수급사업자 비율 39.7% : 직접요청(91.8%), 중기조합 요청(8.2%)
- 조정요청을 직접 하지 않은 이유 : 거래단절, 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등
- 조정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 중기조합 외 중소기업 관련 단체에도 대행협상권 부여(16.2%), 중기조합 대행협상 요건·절차 완화 또는 삭제(10.5%)

□ 추진방향

○ 사전적 협의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 방안을 미리 협의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

○ 중기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대행협의 요건*** 삭제

* (재료비)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
(노무비)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노무비가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 상승(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를 넘으면 7% 이상)
(기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하나가 나머지 대금의 3% 이상 상승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자율적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연동제 자율운영** 시행

-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가 시급한 문제임에 비해 **법 개정**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모**되므로 법 개정 이전 **자율적 연동계약**을 **확산**
-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동계약서 양식**과 **가이드북**을 제작·배포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도입 시 **인센티브** 마련

○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법**(공정위)·상생협력법(중기부) **개정**

- 하도급계약 서면에 연동에 관한 사항 기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 추진**

○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대행협상 활성화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 현행 **대행협의 요건**을 **삭제**하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없이도 중기조합의 대행협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 연동계약 체결 수급사업자 수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원자재 가격상승 시 수급사업자는 거래단절 우려로 납품단가 조정 요청을 하기 어려움	○ 연동계약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사후 협상 없이 납품단가에 반영 ○ 대행협의 요건 삭제로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대행협의를 적극 신청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시장에 새로운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서 수범자인 기업들의 제도 인지 부족 우려

- 제도 도입 후 설명자료 배포, 설명회 등 적극 홍보 필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하도급법 개정(~2분기)

- 연동계약에 관한 사항 기재의무 규정(대상 원재료, 조정 요건 등)
- 연동계약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규정
- 연동제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의 요건 삭제(하도급법 제16조의 2)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4분기)

- 연동제 관련 위임사항 규정
-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의 요건 삭제(시행령 제9조의 2)

□ ’23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 공정위, 위·수탁거래를 규율하는 중기부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성 있는 법체계 마련

- 제도 도입 이후 현장 안착을 위해 자율운영 기업 공동 모집, 설명회 등 제도 홍보에도 적극 협조할 필요

○ 공정위원장-중기부장관 연동제 안착을 위한 논의(3.21.), 연동제 논의 실무협의체 등 상시 공조 체계 가동

□ 추진일정(잠정)

○ 하도급법 개정 및 연동제 관련 설명자료 배포(2분기)

○ 하도급법 시행령 1차 개정 및 하도급 표준 연동계약서 제정(3분기)

○ 하도급법 시행령 2차 개정 및 연동제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4분기)

□ 홍보계획

○ 법·시행령 개정 시 보도자료 배포

○ 기업 대상 연동제 현장 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 연동계약 적극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 등 개최

3-8-3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약관특수거래과	협조기관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조형수 사무관	연락처	044-200-4498
소요예산	비예산사업		

□ 추진배경

○ 금융위 소관 법령*에서 금융위가 공정위에 금융분야 약관을 통보하고 공정위가 약관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①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 ②자본시장법, ③여신전문금융업법

○ 공정위는 매년 금융위(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융약관을 심사하여 시정요청하는 등 협업을 통해 불공정 금융약관을 개선하고 있음

□ 현황(문제점) 진단

○ 금융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금융분야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상존

□ 추진방향

○ 금융위(금감원),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담당자간 협의채널 구축)하여 금융약관을 효율적으로 심사 및 불공정약관 개선 추진

* 관계기관(공정위·금감원·4개 금융협회·12개 금융사) 간담회 개최(2.16)

□ 세부 추진사항(주요내용)

○ 은행분야 제·개정 금융약관 불공정성 검토 및 시정 요청

○ 상호저축은행분야 제·개정 금융약관 불공정성 검토 및 시정 요청

○ 여신전문분야 제·개정 금융약관 불공정성 검토 및 시정 요청

○ 금융투자분야 제·개정 금융약관 불공정성 검토 및 시정 요청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매년 제·개정되는 금융약관 수가 방대하여 공정위와 금융위간 협업체계 없이는 불공정약관 통용을 방지하는데 한계 - 금융약관 심사 시 업계와 직접적인 소통 창구가 부족	○ 공정위와 금융위(금감원) 간 협업을 통해 금융분야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및 피해 예방 -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2.16) 등 소통을 강화(담당자간 협의채널 구축)하여 금융약관 심사를 효율적으로 추진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검토대상 금융약관 수가 많고, 금융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불공정성 검토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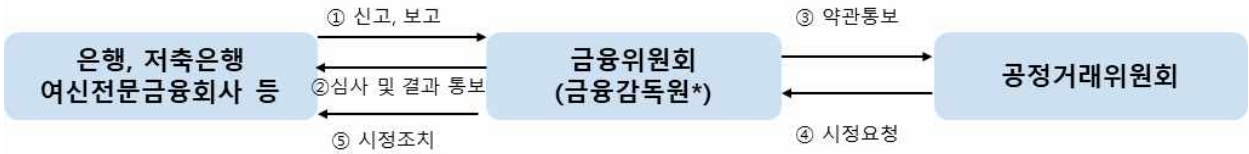
□ '23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금융위) 금융회사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금융 약관 공정위 통보 → (공정위) 통보받은 약관 심사 및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요청 → (금융위)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조치

<금융 분야 약관 제·개정 절차>



*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약관의 보고 접수, 통보, 변경 권고·명령 등의 권한은 금감원에 위탁되어 있음

□ 추진일정

○ ('23.1분기) 금융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 2.16., 공정위·금감원·4개 금융협회·12개 금융사 참석

○ ('23.2분기~) 금융약관 불공정성 검토

○ ('23.4분기) 불공정약관조항 금융위(금감원)에 시정 요청 및 보도자료 배포

□ 홍보계획

○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보도자료 배포(12월)

3-8-④ 소비자24 제품 인증 정보 개선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안전교육과	협조기관	농림부, 해수부, 식약처, 농진청, 소방청 등
담당자	김태훈 조사관	연락처	044-200-4911
소요예산	('22년) 483백만, ('23년) 483백만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및 온라인·비대면 거래 폭증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부 제품이 미승인/미신고된 상태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

□ 현황(문제점) 진단

○ 개별법상 승인·인증이 없이는 판매할 수 없는 생활화학제품 등 위해(우려)제품의 인증/인허가 정보가 각 부처별로 개별 관리

* 24개 정부기관에서 총 247개 인증제도(법정의무 98, 임의 149)를 운영 중

-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필수 인증/인허가를 받았는지 쉽게 알기 곤란

□ 추진방향

○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제품 안전 관련 인증/인허가 정보를 소비자24에서 연계 통합하여 사용자가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

* 국정과제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에 포함

○ 각 기관마다 별도 관리하는 인증, 인허가 관련 각종 정보시스템을 소비자24에 연계하여 데이터 상시 제공

* `22년 인증 정보 개선 사업 시 기존의 인증 7종, 인/허가/신고 6종에서 인증 8종, 인/허가/신고 5종 순증하여 현재 인증 15종, 인/허가/신고 11종 등 총 26종

□ 세부 추진사항

○ 각 부처 인증/인허가 제도 및 정보시스템 현황을 분석하고 연계 대상을 선별하여 사업계획 수립

○ 연계 대상 부처/기관과 직접 대면/유선 협의 실시 및 협력하에 인증정보 DB를 확대 구축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인증/인허가 정보 연계 확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소비자가 각 기관 인증정보 시스템에서 제품명을 검색하여 인증 취등록 여부를 확인하거나, 확인없이 구매	○ 소비자24 앱의 '바코드 검색' 기능 또는 '인증정보' 메뉴에서 인증·인허가 여부 확인 후 구매 ○ 판매자는 판매상품의 승인·인증번호와 함께 소비자24에서 확인 가능한 링크를 소비자에게 제공 가능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연계 대상 부처·기관이 다수이며 기관 측의 데이터·API 제공 등 적극적 동의·협조를 이끌어낼 필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3년 소요예산

○ 인증/인허가제 현황 분석 및 데이터 연계·표준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비 483백만원 소요

□ 추진일정

○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계획 마련(1분기)

○ 구축 사업 발주(2분기)

○ 시스템 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의 및 기능 구현(3분기)

○ 시범운영 실시(4분기)

□ 홍보계획

○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시점에 보도자료 배포 및 소비자24에서 대국민 이벤트 개최

3-8-5 CVC 관련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 지주회사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협조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담당자	김영찬 사무관 김치열 사무관	연락처	044-200-4857 044-200-4936

□ 추진배경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21. 12. 30. ~)

*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어 왔으나, 벤처투자 촉진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타인자본을 활용한 계열확장, 사익편취 등) 방지를 위해 CVC 설립 및 투자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장치를 함께 마련

□ 추진방향

○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공정위·중기부·금감원·기재부) 협의체 운영

□ 세부 추진사항

○ CVC 관계부처·기관 간 협의체 운영

- (구성) 공정위·중기부·금감원·기재부*로 구성

* '22년에는 공정위, 중기부, 금감원으로 CVC 관계기관 협의체가 구성·운영되었으나, '23년부터는 기재부도 참가 예정

- (주요 역할)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 공유, ▲일반지주회사의 CVC 등록 및 운영 과정 점검, ▲CVC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계의 애로사항 공동 대응

- (회의 개최) 반기별로 협의체 회의 개최 예정

○ CVC 제도 성과확산 홍보 및 의견 수렴, 업계 간담회·설명회 등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

* '22년에는 제1호 지주회사 CVC 등록 보도자료 배포('22.3.31.), 업계·관계기관 간담회('22.4.10.)「일반지주회사의 CVC 제도 매뉴얼」마련·배포('22.12.28.) 등을 공동 실시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일반지주회사의 원활한 CVC 설립 및 운영에 어려움	○ CVC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원활한 CVC 설립을 지원하고 운영상 애로사항 대응에 만전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특이사항 없음

9.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을 만듭니다.

3-9-1 국민이 직접 뽑는 정책 제안 평가

주관부처/부서	공정거래위원회/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협조기관	해당없음
담당자	송영인 조사관	연락처	044-200-4268

□ 추진배경

○ 공정위는 연 1회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제안을 선발·자체 포상**

- 제안 평가단계에서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 및 공적심의회**의 심사를 통해 우수제안을 선발

* 주니어보드: 4급 ~ 9급까지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을 선정하여 업무자문 및 중간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하는 제도

** 공적심의회: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국장급으로 구성된 평가체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 의견 제안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 국민제안을 포상**하여 국민의 **우수 제안 제출 동기를 강화**할 필요

- **실효성 있는 제안**의 **선정 및 평가** 과정 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 평가 단계**에서의 **국민참여**를 확대

□ 세부 추진사항

○ **국민제안 공모 포상심사시** 국민체감도 지표를 포함

- 국민제안 공모로 접수된 제안 중 각 사업담당 부서가 채택한 제안을 대상으로 **포상 등급 결정**시 **국민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함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중앙우수제안에 제출할 기관 자체우수제안**을 **국민심사**를 거쳐 선정

- 1년간 공정위에서 채택·실시한 제안을 국민심사에 부쳐 우수하다고 평가된 제안을 행정안전부에 우수제안으로 제출

□ 기대효과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공정위 내부에서 우수제안이 결정되어 제안자의 참여효능감 저하	○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제안을 포상하여 제안자의 참여효능감을 증진하는 한편, 우수한 제안 제출 촉진

□ 추진일정

○ 자체 우수제안 선정시 국민심사결과 반영(6월)

○ 국민제안 공모 후 채택제안 심사시 국민심사 반영(12월)

□ 홍보계획

○ 공정위 적극행정 국민소통단*의 SNS를 통해 평가 홍보·참여 유도

* 공정위의 적극행정 사례·제도·정책 등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

3-9-2 국민이 직접 뽑는 정책 제안 평가

주관부처/부서	광주사무소	협조기관	해당없음
담당자	총괄과 이신무	연락처	062-975-6811

□ 추진 배경

○ 지역 내 사업자와의 **긴밀한 소통창구**로서 중소기업중앙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 및 사업자·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지역경제, 해당 업계 현황 파악 및 공정거래제도 문화 확산

- 교육, 홍보 등 **일시적·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관기관 및 단체를 중간 접점으로 활용하여 **상시적·쌍방향 소통창구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현황(문제점) 진단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위주의 방식**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지역 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정위 역할에 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보다 교육·홍보 등 **법 위반 예방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음

- 공정위 역할에 대한 기대로 공정거래제도 마련 및 교육·홍보 등 강화가 59%로 가장 많았고, 처벌 강화가 24%로 그 다음

○ **지금까지**의 법 위반 예방 활동은 교육·홍보 등 **일방적 소통방식**으로서 **피드백**이 **부족**하여 예방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므로 **상시적인 쌍방향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 추진 방향

○ 지역을 권역별로 분할하고 각 권역별 중소업체, 소상공인, 소비자

등을 대표하는 유관기관 및 단체를 선별하여 공정위 담당 직원과 **'긴밀한 소통 네트워크'를 형성**

-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홍보, 이동 상담 뿐 아니라 지역경제 현황, 해당 업계거래 동향 파악, 개정 법률 시행 관련 피드백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활용하는 등 **상시적·쌍방향적 소통 강화**

□ 세부 추진사항

○ 광주, 전남·북, 제주 **각 권역별** 유관기관 및 단체 **후보군 선별**('23. 3월)

- 중기중앙회, 상공회의소, 주요 산단, 가맹협회, 사업자·소비자단체 등 현황을 파악하고 업종별 대표성이 높은 후보 5~6개*를 선별

* 관내 건설하도급 관련 민원*이 많으므로 권역별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는 필수적으로 포함

○ **최종 권역별 업종별 2~4개를 선정**하고 해당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 후 **상시 소통 창구 마련**('23. 3월)

- 담당자 전화, 메일 등 상시 소통 가능 연락망 마련

○ **상시적으로** 해당 업계의 건의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 업종별 현안 파악, 개정 법령 및 달라진 공정거래제도 홍보, 자율적 분쟁해결 방안 모색 등 **쌍방향 소통 시작** ('23. 4월~)

- 소통의 내용 및 피드백은 권역별, 업종별로 별도 관리

○ **반기별 종합 점검**을 통한 지역 내 공정거래제도 정착 정도를 파악하고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위한 각자의 **역할 재정립**('23. 6월, 12월)

- 매년 초 업무계획 수립에 점검 내용 반영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 성과목표

시행 전	시행 후
○ 일시적·일방적 교육, 홍보 등을 통한 공정거래제도 전파	○ 상시적·쌍방향 소통을 통한 자율적 공정거래문화 저변 확대

○ 기대효과

시행 전	시행 후
○ 공급자의 필요에 의한 행정서비스 ○ 민원 발생 후 사후 조치 위주 업무 ○ 소비자로서 수동적인 행정 소비 ○ 제도 실행 관련 느린 피드백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 민원 발생 전 사전 예방적 조치 가능 ○ 생산자로서 능동적인 행정 창출 ○ 제도 실행 관련 빠른 피드백

□ 과제 추진상 장애요인

○ 제한된 인력으로 사무소 주된 업무인 사건 처리 업무 외 상시적·쌍방향 소통 전문 인력을 배치하기 곤란하고, 사건의 과중에 따라 소통의 내용 및 빈도에 영향

- 내실있고 활발한 소통을 위해 향후 인력 보완 필요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계획

○ 해당 없음

□ '23년 소요예산

○ 비예산사업

□ 추진체계

○ 다수 기관이 관련된 과제 아님

□ 추진일정

○ 세부 추진사항 참조

Ⅲ. 정부혁신 확산 방안

□ 교육 및 학습 활성화 방안

○ **(정부혁신 연구모임 활성화)** 주니어보드 및 정부혁신어벤져스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의견 제시 등의 기회 부여

○ **(인센티브)** 정부혁신 우수과제 및 혁신(협업) 우수인재 선발하여 장관 표창 및 상금 수여, 혁신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성과 홍보 방안

○ **(언론보도)** 각 혁신 과제별로 주요 계획 · 성과 관련 언론 보도를 유도

-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출입 기자단에 대한 사전 · 사후 설명을 강화
-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 등의 브리핑 병행

○ **(인터뷰 · 기고)** 언론 인터뷰 및 혁신 과제별 언론 기고를 추진

- 기관장 등의 언론 인터뷰 시, 혁신 과제를 언급하여 성과를 확산
- 각 혁신 과제 관련 전문지에 대한 기고를 추진

○ **(온라인 홍보)** 동영상, 그래픽,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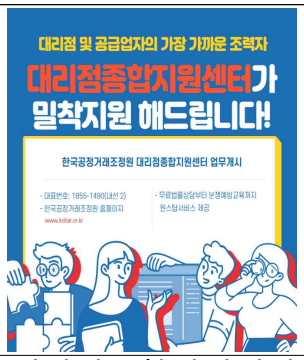
- 각 혁신 과제별 진행 상황을 소개하는 속보 영상, 담당자가 출연하는 생방송,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현장탐방 등을 유튜브 통해 확산
- 카드뉴스·웹툰 등 그래픽 콘텐츠* 및 해설형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 게재

* 그래픽 콘텐츠에 정부혁신 BI를 사용하여 '정부혁신' 브랜드의 긍정적인

** 사진과 해설을 활용하여 특정 주제를 시각적 자료와 함께 소개하는 콘텐츠 형식

- 정책고객 이메일을 활용한 각 혁신 과제별 맞춤형 소통도 강화

<정부 혁신 관련 온라인 홍보 사례('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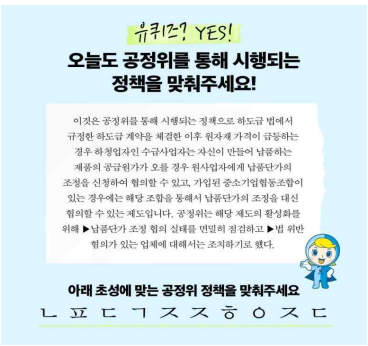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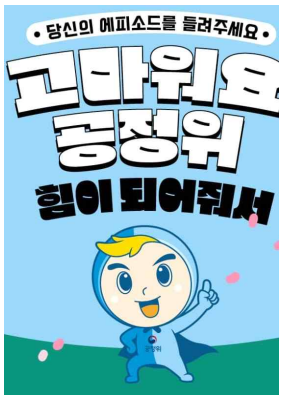
			
웹드라마 제작 및 홍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업무개시 홍보	납품단가 조정제도 홍보	심사지침 개정 카드뉴스 홍보

○ **(이벤트)**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활용한 적극적인 확산을 추진

- '혁신 퀴즈대회', '지식콘테스트' 등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기획하여 온·오프라인 진행

- 이벤트 관련 온·오프라인 광고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확산 유도

<이벤트 사례('22)>

붙 임

2023년 정부혁신 추진과제 연간 홍보 일정

추진 과제	일정										주 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비자24 챗봇 서비스 1-1-1										('24년 1월) 서비스확대 개시, 대국민 이벤트	공정위
										('24년 1월)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이벤트 홍보	
소비자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 차단 1-3-1										('24년 1월)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결과	공정위
										('24년 1월)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결과 보도자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비정형) 데이터 개방 2-4-1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포털 개방서비스	공정위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 및 사전협의	·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요청	· (행안부)조달발주 의뢰	· 사업자선정 및 사업시작						··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시범서비스 수행	
대리점 분야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위임 2-5-1				· 시행령 개정 완료						· 시행령 시행	공정위
				· 시행령 개정 완료 보도자료						· 시행령 시행 보도자료	
공정위	· 고시 개정안 및 지침 제정안	· 개정 고시 및 제정 지침 시행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투명성 강화 2-5-2	행정예고 ·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배포									
공정거래위원회 Fairdata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5-4	데이터포털 홍보 · (홍보방안) · FairData 소식지 발간		데이터포털 홍보 · FairData 소식지 발간		데이터포털 홍보 · FairData 소식지 발간 · FairData 대민 홍보 컨텐츠 제작·배포 · 대표홈페이지 등에 배너게시		데이터포털 홍보 · FairData 소식지 발간		데이터포털 홍보 · FairData 소식지 발간	·· 공공데이터 개방	공정위
적극행정 내실화 2-6-1			·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보도자료		·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보도자료			·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보도자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디지털서비스 개방 3-7-1											소비자원
				행안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발주 및 계약(6~7월)	행안부 「디지털서비스 개방」 과제로 시스템 구축·연계('23.7~12월) * 시스템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에 맞춰 '두낫콜' 누리집에 홍보('24.1월)						
SNS 후기형 기만광고 상시 모니터링 3-7-2										('24년 1월)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결과	공정위
										('24년 1월)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결과 보도자료	
플랫폼 거래질서 자율규제	· 자율규제 논의 진행	· 자율규제 논의 진행	· 자율규제 논의 진행	· 자율규제 논의 진행	· 자율규제 논의 진행	· 자율규제 논의 진행	· 자율규제 논의 진행	· 자율규제 논의 진행	· 자율규제 논의 진행	· 자율규제 논의 진행	공정위
	· 배달앱 자율규제		· 오픈마켓 자율		· 숙박앱 자율						

3-8-1	방안 발표 행사 및 보도자료		규제 방안 발표 보도자료(잠정)		규제 논의 시작 보도자료(잠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확산 3-8-2				· 연동제 도입 및 조정협의 대행 협상 관련 하도급법 개정			· 연동제 지원에 관한 시행령 개정 · 하도급대금 연동 표준계약서 마련			· 연동제 의무에 관한 시행령 개정 · 연동계약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공정위
				· 본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 배포			· 국무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 배포 · 보도자료 배포			· 국무회의 통과 후 보도자료 배포 · 발표회 개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 3-8-3										불공정약관 검토 및 시정 요청	공정위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 요청 보도자료	
소비자24 제품 인증 정보 개선 3-8-4										('24년 1월) 서비스 개시, 대국민 이벤트	공정위
										('24년 1월)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이벤트 홍보	
쌍방향 소통을 통한 지역내 공정거래문화 확산 3-9-2	·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공정거래 문화 확산	· 공정거래 문화 확산	공정위
	· 관내 대학생 대상 공정거래에 대한 캠페인 실시	· 소비자 전문가 대상 공정거래 교육	· 유관단체 협조 공문 발송	· 사업자 대상 소식지 배포	· 사업자 대상 협조 공문 발송	· 사업자 대상 협조 공문 발송	· 대규모 유통업자 대상 홍보	· 이동상담 실시	· 사업자 대상 소식지 배포	· 유관단체와 자문회의	